

# 지식기술융합연구소 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 1조 (명칭 및 목적)** 이 규정은 지식과 기술융합으로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호서대학교 지식기술 융합연구소(이하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조 (위치)**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내에 둔다.

**제 3조 (사업내용)**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

1. 창의적인 융합형 지식기술 전문인력 양성
2. 산학협력을 통한 지식융합산업 육성
3. 국제 및 국내·외 기관과의 공동 학술활동
4. 융복합지식기술산업표준화
5.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## 제 2 장 조직 및 구성

**제 4조 (조직)** ① 연구소에는 교육부, 연구부, 대외협력부, 행정지원부 등을 둘 수 있다.

② 교육부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.

③ 연구부는 연구 기획 및 세부과제별 연구를 담당한다.

④ 대외협력부는 산학협력사업과 대외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,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업무를 담당한다.

⑤ 행정지원부는 회계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.

**제 5조 (구성)** ① 연구소 임원구성은 소장 및 각부에 부장 1인을 둘 수 있다.

②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부장은 소장이 임명하며, 부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.

④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⑤ 연구소에는 상임연구원, 비상임연구원, 객원연구원, 연구원, 박사후연구원(Post-Doc), 전문위원, 연구보조원, 기술원 및 사무원 등을 둘 수 있다.

⑥ 연구소내의 연구원 임용은 대학의‘연구원 임용규정’에 준용한다. 단, 연구보조원은 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(개정 2015.9.1.)

## 제 3 장 운영위원회

**제 6조 (구성 및 회의)**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약 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
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7조 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1. 주요 사업계획 및 운영방법
2. 예산 및 결산
3. 규정 개정 발의
4.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 제 4 장 재 정

제 8조 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당한다.

1. 교외수탁연구비 및 수탁연구비의 간접경비
2. 산업체의 연구개발 출연금
3. 각종 연구비와 기타 수입누적금
4.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

제 9조 (회계연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대학회계연도에 준한다.

## 제 5 장 폐 소

제10조 (폐소) 본 연구소가 폐소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.

## 제 6 장 보 고

제11조 (보고)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때 보고는 연구소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1.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 - 다음해 3월말까지  
(해당 학년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표 포함)
2. 매 회계연도 결산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3.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-1월말까지
4.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

## 제 7 장 보 칙

제12조 (준용)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3조 (운영세칙)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 (경과조치) ① 이 규정 공포와 동시에 종전의 규정은 폐지한다.